

第152回國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11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1991年2月8日(金) 午後2時

議事日程(第11次本會議)

1. 南北離散家族의生死確認을위한決議案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비준동의안
3. 대한민국정부와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간의소통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4. 1990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17件)
5. 海洋汚染防止法改正法律案
6. 廢棄物管理法改正法律案
7.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案

附議된案件

- 議事進行의件 1面
- 1. 南北離散家族의生死確認을위한決議案(統一政策特別委員長 朴寬用 提出) 3面
-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비준동의안(政府提出) 5面
- 3. 대한민국정부와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간의소통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政府提出) 5面
- 4. 1990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17件) 6面
- 5. 海洋汚染防止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 7面
- 6. 廢棄物管理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 7面
- 7.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案(政府提出) 7面
- 休會의件(議長提議) 8面

(14時2分 開議)

○議長 朴浚圭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11次 本會議을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局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局長 姜天求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을 끝에 실음)

○議事進行의件

○議長 朴浚圭 어제 날씨도 나쁘고 해서 굉장히 걱정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화창한 봄날씨

의 마지막 날을 장식할 것 같습니다.

먼저 會議劈頭입니다마는 존경하는 洪英基議員 議事進行發言申請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英基議員 議長께서는 화창한 봄날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王昭君이라는 美人이 지금 말하는 이 실크로드에 잡혀 갔다 이 말이에요. 匈奴한테... 그때 뭐라고 했느냐? "胡地에 無花草하니 春來不似春이로다"... 胡나라 땅에는 花草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봄이

와도 봄같지가 않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議事堂 國會의 모양을 보면 아무리 봄이 온 것 같지만 花草가 없습니다. 볼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봄기운을 전연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좀 與野間에 참 綱領에 있는 것처럼 討論을 하면서 오순도순 피차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안하면서 무엇인가 生産的인 國會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소위 5共때의 좋지 않은 殘滓인 여러가지 惡法을 改廢를 하고 國民의 權利를 伸張할 수 있는 좋은 立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아는 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法律家나 혹은 자기 所管 常任委에서 所管된 그런 案件이 아니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러분께 귀뜸을 해 드린다면 첫째는 國會法이 있고 그 다음에는 安企部法이 있고 세번째는 警察法 혹은 警察中立化法이 있고 그 다음에는 保安司에 관계된 法律이 있고 또 國民의 通信秘密을 보호하기 위해서 通信秘密保護法이 있고 또 數3年前에 4黨構造下에서 統合主義原則에 의한 醫療保險法 또 勞動組合法 勞動爭議調整法 이런 세 가지 法律은 4黨이 滿場一致로 通過시켜서 行政府로 보냈으나 大統領께서는 이렇다 할 남득할만한 이유를 提示함이 없이 자기가 總裁로서 거느리고 있는 自黨所屬 國會議員까지도 贊成한 法律을 否決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政治道義上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國家保安法 이것 고쳐야 됩니다. 며칠 전에 既存 財務委員會에서 對蘇銀行借款 10億弗에 대한 同意要請이 와서 審議를 했습니다. 그 때 제가 물었습니다.

國家保安法 2條2項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고르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외치고 글라스노스트를 외친다하더라도 그것은 共產主義 體制안에서의 改革일 뿐이지 共產主義自體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國家保安法 2條2項이 嚴存하는 가운데에는 法律上으로는 蘇聯은 反國家團體임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反國家團體한테 돈을 30億弗, 2兆 남짓한 돈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한데 주어야 할 것이냐, 法律은 敵性國家 즉 敵이라고 그러고 政府의 이

對蘇協力 이번의 행위는 實際行爲는 友好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같은 政府가 反國家團體라고 하고 그 反國家團體한테 막대한 援助를 한다는 이것은 國家의 소박한 常識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남득이 안된다, 國民을 이끌어가는 政府는 특히 與黨側에서는 國民이 쉽게 남득할 수 있는 淸易하고 알기 쉬운 그런 政治를 해야지 이렇게 價值體系를 혼란시킨 이런 것은 안된다, 하기 때문에 國家保安法을 뜯어 고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主張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을 보면은 政治 經濟 文化 모든 部門에 있어서 交流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政府의 承認만 받으면 누구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고 交易도 할 수 있고 별 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法律에 의해서 國家保安法의 6條 이 敵地 潛入·脫出罪 또 7條 鼓舞·同調 뭐 이런 것... 이런 것 전부 다 罪가 안되게 시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8條에 通信·會合 9條의 金品提供·便宜提供 이런 등등... 이런 등등이 전부 다 南北交流法에 의해 가지고 政府의 承認만 받으면 다 하게 되어 있으니 사실상 國家保安法의 6條, 7條, 8條, 9條 등 그 國家保安法의 核心的인 條文은 전부 다 이것은 死文化되어 있습니다.

또 國家保安法 2條2項은 30億弗 주기 이전부터라도 이미 政府가 死文化시킨 것이예요. 政府가 死文化시켜 놓고 이 法을 안 고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제 所見으로는 政府는 南北交流法이란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후두루마뚜루 써먹고 反政府人士 在野人士 處理 괴상한 口號를 걸고 會合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이 死文化된 이 條項을 끌어내 가지고 彈壓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國家保安法은 國家를 保安하기 위한 法律이 아니라 政權保安이요 野黨彈壓하는 그런 法律로 轉落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또 그 다음에 安企部法에 대해서 얘기하면 國民이 내는 血稅를 가지고 安企部가 運營되고 있는데 國民의 代表가 安企部の 豫算이 어떻게 짜여지며 뭐며 전연 모릅니다. 豫算

會計에 관한 特別法에 의해 가지고 總額主義로 해서 전부 다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國家의 外交·軍事에 관한 高度의 機密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것까지 要求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돈이 어느 費用이 얼마 쓰인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安企部가 海外情報에 대해서 참 活動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 成果가 얼마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間諜罪를 제외하고는 國內搜查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 警察이 있고 檢察이 있고 그 외에 軍隊안에는 保安司가 있고 또 됩니까? 金永駿씨가 하고 있는 監査院이 있고 이러한 機關이 다 있는데 무엇때문에 國內搜查까지도 安企部가 하느냐? 이것은 안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또 이 保安司 이것은 昨年에 우리 政治人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政治查察했습니다. 이 政治查察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軍隊안에 限해서 軍事 말하자면 諜報活動 이것만 局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警察도 옛날에는 民衆의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國立警察의 좋은 像을 그 말로 象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警察을 보면 이것은 이 데모隊 鎮壓하는 그런 警察로 轉落을 했고 아무리 犯罪와 戰爭을 宣布했다고 그러지마는 殺人 強盜와 그런 凶惡犯은 날뛰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警察이 身分의 獨立... 獨立이 없기 때문에 그 政權을 쥐고 있는 그 政權에 충실해야만 昇進도 되고 자리를 維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警察을 中立化시켜서 政治權力으로부터 身分을 獨立시켜야 됩니다. 또 通信秘密保護法은 憲法 18條에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에 대해서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法律에 의해 가지고 憲法規定에 의해 가지고 우리 黨에서는 通信秘密保護法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미 4黨體制下에서 滿場一致로 넘어간 醫療保險法 勞動組合法 勞動爭議調整法 이것은 뭔가 結論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진연 하지 않고 이 國會가 끝나쳐서는 國民...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場內騷亂)

○議長 朴浚圭 자, 洪議員 어지간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場內騷亂)

자, 洪議員 洪議員! 친애하는 洪議員! 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場內騷亂)

자, 아니 倫理綱領을 어제 制定했는데 품위를 유지하고...

(場內騷亂)

어제 우리가 倫理綱領을 만들어 놓고 오늘 됩니까?

저 모두 점잖은 말씀을 쓰세요. 점잖은 말씀쓰시고 洪議員 洪議員! 우리 같이 늙어 가는데 품위를 지킵시다 품위를 지켜...

(場內騷亂)

자, 모두 座席을 정돈해 주세요.

座席을 정돈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모양인데 國會法으로 10분밖에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10分以後는 速記錄에 안 들어가니까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洪議員 말씀은 우리 다 年上의 어른들 대접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다 참아 들었으니까...

(場內騷亂)

가만히 좀 하세요. 가만히 좀 하세요.

자, 자, 부탁드립니다. 좀 조용히 합시다.

그리고 洪議員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머지...

(場內騷亂)

자, 조금 가만히 계세요.

적어 내시면 議事錄에는 내가 보태 드릴게... 그래서 그걸로 끝냅니다.

1. 南北離散家族의 生死確認을 위한 決議案(統一政策特別委員長 朴寬用 提出)

(14時36分)

○議長 朴浚圭 여러분! 議事日程 第1項 南北離散家族의 生死確認을 위한 決議案을 上程합니다.

統一政策特別委員會의 釜山 東萊甲區出身이신 朴寬用委員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政策特別委員長 朴寬用 統一政策特別委員會委員長 朴寬用입니다.

當 特別委員會에서 提案한 南北離散家族의 生死確認을 위한 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解放 이후 祖國이 分斷된 지 어언 半世紀를 지나는 동안 南과 北의 우리 民族이 分斷으로 인해 받은 고통과 시련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分斷의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父母兄弟를 지적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불운이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血肉의 生死조차 모르고 지내야 하는 1千萬 離散家族들의 슬픔과 애환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民族的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言論을 통해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만 6·25 때 헤어진 북녘에 계시는 어머니가 머나먼 中國 땅으로 달려가서 고향이 내다 보이는 鴨綠江둑에 서서 어머니를 수 없이 부르다가 끝내 돌아오고만 한 아들의 슬픈 사연은 1千萬 離散家族들의 슬픔과 고통을 단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南北으로 흩어진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생사를 알고자 하고 兄弟姊妹가 血肉을 그리고 만나고자 하는 것은 人間本性의 발로로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天倫인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分斷國이었던 獨逸의 경우에는 分斷직후에도 離散家族들의 書信往來와 故鄉訪問이 별다른 제한없이 이루어졌으며 1961年 東獨에 의해서 베를린 障壁이 설치된 이후에도 離散家族들의 相逢과 往來는 人道的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62年度 7월에 合法移住가 허용된 이후에는 매년 平均 1萬家族이상의 離散家族들이 재결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獨逸統一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分斷직후에 있었던 간헐적인 書信交換과 왕래가 6·25戰爭으로 전면 중단된 채 相逢과 書信往來는 고사하고 生死確認조차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1千萬 離散家族들은 文字 그대로 생이별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血肉相逢의 그날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南·北韓間에 離散家族 問題解

決을 위해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71년부터 시작된 赤十字社間的 會談이 수십차례에 진행된 바 있습니다마는 85年度 단 한차례만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交換만을 성사시켰을 뿐 끊임없는 중단과 교착만을 반복함으로써 血肉相逢의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던 1千萬 離散家族들의 가슴에 큰 실망과 또 다른 아픔만을 주었을 뿐입니다.

離散家族들의 血肉에 대한 그리움은 해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데 반해서 問題解決을 위한 會談은 중단과 교착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막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分斷이 어언 半世紀를 지속하면서 離散1世代라고 할 수 있는 헤어질 당시의 부모들은 年老하여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고 자녀들도 壯年期에 이듬에 따라서 離散家族들의 再會와 相逢은 물론이지만 우선 生死만이라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當 特別委員會는 南北으로 흩어진 離散家族들의 生死確認이라도 시급히 실현시킴으로써 1千萬 離散家族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國民의 뜻을 代辯하는 議會의 責務라고 인식하고 이를 國會의 決議로써 채택하여 北韓의 最高人民會議에 送付함으로써 南北議會가 함께 노력할 것을 提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本 決議案의 主文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大韓民國 國會는 反目과 對立의 分斷 民族史를 극복하고 和解와 協力의 統一 民族史를 열어가야 할 오늘에 있어 離散家族 問題의 解決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民族的 課題라고 認識하며 南北의 1千萬 離散家族들과 苦痛을 함께 하고자 한다.

分斷과 戰爭의 試鍊이 아무리 가혹하다 하더라도 父母兄弟를 지적에 두고 生死조차 모르고 지내는 南北의 現實은 1千萬 離散家族들의 苦痛의 次元을 넘어 民族的 悲劇이요 또한 羞恥라 아니할 수 없다.

大韓民國 國會는 지난 70年代初 이래 있어 온 南北間的 赤十字會談이 成果를 거두기를 期待해 왔으나 1985年 단 한 차례의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交換만을 成事시켰을 뿐 그동안 중단과 교착을 거듭함으로써 血肉間的 生

死確認만이라도 所望하던 南北의 1千萬 離散 家族들의 가슴에 큰 失望과 또다른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

民族이 分斷된 지 어언 半世紀를 경과하면서 레어질 당시의 어린 子女들은 이제 壯年期에 들어섰고 父母들은 어느덧 人生의 黃昏期를 맞아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現實을 考慮할 때 南北으로 흩어진 1千萬 離散家族問題의 解決이야말로 時間을 다투는 切迫한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大韓民國 國會는 南北의 1千萬 離散 家族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解消하고자 努力하는 것이 國會의 責務임을 認識하고 다음과 같이 決議한다.

· 大韓民國 國會는 南北 離散家族들의 再會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強調하면서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그들의 生死만이라도 確認하는 事業을 빠른 시일내에 착수하도록 雙方議會가 海寧 赤十字社에 각각 勸告할 것을 北韓 最高人民會議에 提議한다.

· 大韓民國 國會는 중단된 南北 赤十字會談의 조속한 再開 등을 위해 雙方議會가 할 수 있는 필요한 措置와 支援을 다 할 것을 北韓 最高人民會議에 促求한다.”

이상 決議案은 當 委員會에서 與野間의 충분한 協議와 審議를 거쳐서 提案된 것이오니 與野議員 여러분 滿場一致로 議決해 줄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南北離散家族의生死確認을위한決議案

(統一政策特別委員長)

(附錄에 실음)

○議長 朴浚圭 감사합니다.

그러면 南北離散家族의生死確認을위한決議案에 대해서 여러 議員들께서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滿場一致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대한민국의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

국군대외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비준동의안 (政府提出)

3. 대한민국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 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政府提出)

(14時45分)

○議長 朴浚圭 議事日程 第2項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 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비준동의안과 議事日程 第3項 대한민국 정부와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간의소득에 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 동의안 이상 두 件을 一括하여 上程합니다.

그러면 外務統一委員會의 존경하는 李相回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回議員 李相回議員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 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外務統一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協定은 SOFA 즉 韓美駐屯軍地位協定 第5條의 規定에 대한 特別措置를 規定하기 위한 것으로서 前文 및 本文 4個條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駐韓美軍의 韓國人 雇傭을 위한 經費의 一部를 負擔하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餘他經費의 一部도 負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分擔經費의 실제 額數는 每 會計年度마다 우리 政府가 결정하여 美側에 通告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效力의 발생은 相互 通告하는 날부터 1993年12月31日 效力이 終了되는 限時的 協定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 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條約은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33번째의 二重課稅防止協約으로서 우리나라와 蘇聯間의 經濟去來에서 발생할 수 있는 租稅의 二重負擔을 防止하고 課稅上의 不安과 紛爭의 素地를 除去하며 兩國間 經濟交流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前文 및 本文 28個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適用對象租稅는 우리나라의 경우 所得稅 法人稅 住民稅이고 蘇聯의 경우에는 外國法人에 대한 所得稅 合作法人에 대한 利潤稅 個人所得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適用對象所得은 不動產所得 事業利潤 海運 및 航空運輸所得 配當 利子 및 使用料 讓渡所得 등의 人的 用役所得 등이고 二重課稅의 회피를 위하여 一般締約國에 납부되는 稅額은 他邦 締約國의 租稅로부터 控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두件的 協定批准同意案은 1月26日자로 當委員會에 회부되어 第152回國會 臨時會 第2次 및 第3次 外務統一委員會에 一括上程하여 外務部長官으로부터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진지한 審議를 한 결과 批准을 同意하는 것으로 滿場一致 可決하였습니

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비준동의안 審査報告書

(外務統一委員會)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비준동의안

(政 府)

대한민국정부와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 위한협약비준동의안 審査報告書

(外務統一委員會)

대한민국정부와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 위한협약비준동의안

(政 府)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朴浚圭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지역 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5 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議員들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議員들께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1990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17件)

(14時50分)

○議長 朴浚圭 議事日程 第4項 1990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 17件을 일괄하여 上程합니다.

이 國政監査結果報告書는 17個 常任委員會에서 異議없이 與野間에 滿場一致로 채택하여 報告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本會議에서는 口頭報告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議決하고자 합니다. 여러 議員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7個 常任委員會의 1990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를 各 常任委員會에서 報告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0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 17件이 各 常任委員會에서 報告한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지금 채택된 國政監査結果報告書 가운데 該 當機關에서 示정할 사항과 處理할 사항에 대해서는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第16條의 규정에 의해서 該當機關에 移送하여 處理結果를 報告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件의 國政監査結果報告書는 오늘 會議錄에 그대로 揭載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0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17件)

(附錄에 실음)

- 5. 海洋汚染防止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
- 6. 廢棄物管理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
- 7.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案 (政府提出)

(14時52分)

○議長 朴浚圭 議事日程 第5項 海洋汚染防止法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6項 廢棄物管理法改正法律案 同 第7項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案 이상 세 件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保健社會委員會의 존경하는 宋斗瀨議員께서 이 세 件을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斗瀨議員 保健社會委員會 宋斗瀨議員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月7日 第6次 保健社會委員會에서 議決한 海洋汚染防止法改正法律案 廢棄物管理法改正法律案 汚水·糞尿廢水의處理에 관한法律案 등 3件의 法律案에 대하여 保健社會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一括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우선 上記 3個 法律案의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海洋汚染防止法改正法律案은 最近 大量油類 汚染事故가 頻發함에 따라 이에 效果的으로 對處하기 위하여 기름 流出事故의 豫防 및 防除措置에 관한 規定을 補強하는 한편 主要國家에서 受諾·採擇하고 있는 國際海洋汚染防止協約,上的 有害液體物質에 관한 各種規制措置를 이 法에 受容하는 등 未備點을 補完함으로써 海洋汚染의 防止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廢棄物管理法改正法律案은 지금까지 이 法의 適用을 받던 管理對象廢棄物中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가 別途의 法律이 制定되어 管理되게 됨에 따라 이에 關聯되는 條文을 削除하고 一般廢棄物과 産業廢棄物로 區分되던 기존의 廢棄物의 分類體系를 國民保健에의 有害過程을 基準으로 變更하여 一般廢棄物과 特定廢棄物로 分類하고 그에 따른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의 責任을 명확히 하며 아울러 原因者負擔原則에 따라 特定製品 및 容器에 대한 回收·處理費用 豫託制度를 導入함으로써 廢棄物의 적정한 處理와 再活用을 통한 廢棄物의 資源化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法律案은 종래 廢棄物管理法 등에서 規律하던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가 一般의인 廢棄物과는 달리 水質汚染에 직접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排出源이 全國적으로 다양하게 散在되어 있어 이로 인한 環境汚染을 보다 效果的으로 防止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廢棄物管理體系 및 廢水排出施設 管理體系와는 別途의 管理體系를 構築할 需要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廢棄物管理法·등 關聯法規에서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에 關聯되는 條項을 分離·補完하여 別途의 法律로 制定하려는 것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이상 3件의 法律案에 대하여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진지하게 審査한 結果 이 3件의 法律案을 모두 修正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修正한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廢棄物管理法改正法律案에서는

첫째 特定廢棄物排出業者에 대해서도 特定廢棄物과 一般廢棄物을 分離保管하도록 義務를 賦課하고

둘째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廢棄物處理施設이 해당 地域住民의 生活環境 保全과 改善을 위하여 必要한 支援對策을 講究하도록 關聯 地方自治團體에 要求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이 法 施行당시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6月 아내에 이 法에 의한 施設 裝備등 要件을 갖추어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도록 猶豫期間을 延長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海洋汚染防止法改正法律案에서는

첫째 廢油處理·清掃業者에 대한 操業停止期間의 上限線을 明示하며

둘째 기름등 廢棄物이 排出된 경우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申告한 者에 대한 罰金을 緩和하며 其他 一部字句를 整理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法律案에서는 糞尿關係 營業者 등이 이 法이 定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경우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도록 한 것을 過怠料에 處하도록 하고 其他 一部字句를 整理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3件의 法律案에 대하여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照하시고 아무쪼록 保健社會委員會가 審査議決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海洋汚染防止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保健社會委員會)

海洋汚染防止法改正法律案
(政 府)

廢棄物管理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保健社會委員會)

廢棄物管理法改正法律案
(政 府)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案 審査報告書
(保健社會委員會)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案
(政 府)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議長 朴浚圭 그러면 먼저 海洋汚染防止法改正法律案에 대하여 保健社會委員會에서 修正한 부분과 其他部分의 原案에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廢棄物管理法改正法律案에 대하여 保健社會委員會에서 修正한 부분과 其他部分의 原案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案에 대하여 保健社會委員會에서 修正한 부분과 其他部分의 原案에 여러 議員들이 同意하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休會의件(議長提議)

(14時59分)

○議長 朴浚圭 다음은 休會決議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하루 本會議를 休會하고자 交渉團體代

表들간에 合意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諒解하십니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지난 1月21일부터 始作된 20日間의 臨時國會가 내일이면 끝나는 날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치고 나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록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결프事態關聯 同意案을 處理하여 不法의인 武力侵略에 대응하는 世界秩序에 參與하게 되었고 法律案 등 40餘件을 處理하였습디마는 아직 改革立法의 處理에 있어서는 會期初의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議長이 듣기로는 與野間에 상당한 수평하에 의견접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낙심은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會期동안에 議員外遊問題 水西地區宅地관련問題 등이 發生하여 우리 國會에 대한 國民들의 視線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겠습디다.

우리 國會는 그것을 귀감으로 삼아서 自淨 努力의 일환으로 國會議員倫理綱領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디다마는 우리 모두 스스로 옷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國民으로부터 사랑 받는 國會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속담에 선비는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위 오얏나무밑에서는 갓끈을 다시 안 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모처럼 채택한 倫理綱領에 따르는 倫理規範과 倫理言語를 하루속히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國民의 規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번 더 다짐하겠습니다.

國內外的으로 또한 經濟的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난국을 수습하는데 우리 與野政治人들이 모두 합심을 해도 모자랄듯 합니다. 이번 會期中에 처리하지 못한 여러 案件 閉會중이라도 各黨 우리 國會議員들이 서로 애기를 해서 마음의 접근 또 그리고 해결책의 접근이 會議自體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警察法 혹은 그 밖에 改革立法 또 政治資金法 國會法 國會議員選舉法 등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代表議員들간에 다음 臨時國會를 곧 소집

될 것으로 압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히 계시고 그동안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3分 散會)

- 出席議員數 251人
- 出席國務委員 環境處長官 許南薰

【報告事項】

- 常任委員長職務代理指定 商工委員會 委員長職務代理 幹事 李聖浩 1月31日 委員長出席 또는 後任委員長 選出時까지 (1月31日字)

○幹事選任

委員會	委員名	交涉團體
法制司法	申五澈	民主自由黨
經濟科學	鄭夢準	"
文化公報	李應善	"

(1月31日字)

○議案提出

南北離散家族의 生死 確認을 위한 決議案 (2月7日 統一政策特別委員長 朴寬用 提出)

休會의件 (2月8日 議長提議) 2月9日 1日間

○議案審査

- 海洋汚染防止法改正法律案 (1990年12月8日 政府提出)
- 廢棄物管理法改正法律案
- 汚水·糞尿 및 畜產廢水의 處理에 관한 法律案 (이상 2件 1月25日 政府提出) (이상 3件 2月8日 保健社會委員長 黃明秀 報告)

이상 3件 修正議決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 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간의 소독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의 피와 탈세방지 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이상 2件 1月25日 政府提出)
- (이상 2件 2月8日 外務統一委員長 朴定洙 報告)
- 이상 2件 原案대로 議決

南北離散家族의 生死 確認을 위한 決議案

- (2月7日 統一政策特別委員長 朴寬用 提出)
- (2月8日 統一政策特別委員長 朴寬用 報告)
-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議決

公共用地的 取得 및 損失 補償에 관한 特別法中 改正 法律案 (1989年10月17日 李元禧議員外 69人 發議) (2月8日 建設委員長 吳龍雲 報告)

國會議長(朴浚圭)辭退 勸告 決議案

- (2月5日 許京萬議員外 70人 發議)
- (2月8日 國會運營委員長 金潤煥 報告)
- 이상 2件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

○請願審査

複重法院支院 및 檢察支廳 新設에 관한 請願 (1989年9月12日 이리시 남중동1가86-209 10동2반 김대기外, 725人으로부터 申五澈議員外 5人의 紹介로 提出)

前서울대 이병설 教授 釋放에 관한 請願 (1989年12月12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APT 5-1003 김영자로부터 李海瓊議員外 5人의 紹介로 提出)

價仰村 調聯非理是正 및 財團財產 原狀 回復에 관한 請願 (1990年1月15日 경기도 부천시 남구 범박동 44C D 95-2 김경호外 597人으로부터 崔笑善議員外 18人의 紹介로 提出)

초월명상에 관한 犯罪 再搜查에 관한 請願 (1990年3月29日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584 주공 APT 1004-1202 金正道로부터 朴燦鍾議員의 紹介로 提出)

公權力의 職務 違來로 인한 被害 復舊에 관한 請願 (1990年4月11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9-11 유치오外 47人으로부터 吳坦議員의 紹介로 提出)

改正民法施行日 延期에 관한 請願 (1990年11月22日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유도희총본부 위원장 김경수外 5萬7,470人으로부터 李秉禧議員外 13人의 紹介로 提出)

商法附則改正에 관한 請願

(1990年12月10日 부산직할시동래구명륜동 5-5 우송상사(주)대표이사 정상갑으로부터 金德龍議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7件 2月8日 法制司法委員長 金重權 報告)

醫療職公務員의職級制改編에관한請願

(1989年10月12日 대구시 중구 삼덕2가 52번지 경북대병원 간호사 박경숙外 451人으로부터 姜三載議員의 紹介로 提出)

公務員年金法改正에관한請願

(1989年12月12日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624주공아파트1606-1405 유찬준外 94人으로부터 朴 實議員의 紹介로 提出)

별정우체국職員經歷의公務員經歷認定要求에관한請願

(1990年11月23日 전라북도김제군광활면옥포리903 강주식으로부터 崔洛道議員의 紹介로 提出)

韓國馬事會所管部處移管反對에관한請願

(1990年12月5日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봉덕리 574-128 부안축협조합장 장동일外 13人으로부터 鄭一永議員外 8人의 紹介로 提出)

(이상 4件 2月8日 行政委員長 鄭相九 報告)

食品衛生法中 綠茶의 생산 및 販賣 등에 關聯된 條項 改正에 關한 請願

(1990年6月26日 慶南河東郡花開面富春里 河相演外 15人으로부터 金光一議員外 31人의 紹介로 提出)

輸血로인한AIDS感染患者被審補償에관한請願

(1990年3月3日 서울특별시중랑구목1동 129-121 안종이로부터 李喆鎔議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2件 2月8日 保健社會委員長 黃明秀 報告)

公共用地的取得 및 損失補償에 關한 特例法 등 改正에 關한 請願

(1989年5月13日 慶尙南道蔚山市南區夫谷洞 18 심성구外 2,899人으로부터 沈完求議員外 7人의 紹介로 提出)

수안보지역下水處理場設置에관한請願

(1990年11月22日 충청북도중원군상모면은천리1구 217-5 유영수外 300人으로부터 李鐘根議員의 紹介로 提出)

충주-봉양간國道擴張路線變更에관한請願

(1990年12月5日 충청북도중원군산척면송강리

1,279 최종만外 372人으로부터 李鐘根議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3件 2月8日 建設委員長 吳龍雲 報告)

이상 16件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